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예외 신설〉

■ 한병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552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서기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한병도의원 등 13인
2. 발의연월일 : 2024. 8. 5.
3. 회부연월일 : 2024. 8.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고,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규모 재난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재난 발생일로부터 특별재난지역 선포일까지 소요되는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가의 수습·복구체계에 신속성을 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0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하여 중앙안전안전관리위원회¹⁾ (이하 중앙위원회라 함)의 위원장이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위원회
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 ----- ----- ----- ----- ----- ----- ----- ----- ----- ----- ----- ----- ----- ----- <u>. 다만,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u>

현행	개정안
② ~ ④ (생략)	<u>지 아니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직접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u> ② ~ ④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 중앙대책본부장²⁾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³⁾하고 있음.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2년 특별재난지역 선포제도 도입 이후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재해기간 종료 후 선포되기까지 평균 15일이 소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중앙안전관리위원회) 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5.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에 관한 사항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이 된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하 “대규모재난”이라 한다)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대책본부에 본부장과 차장을 둔다.

③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며,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사능재난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이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요되었으나, 재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18건의 재난에 대해서는 재해기간 내 또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종료 이전에 ‘우선 선포’하였는데, 이 경우 소요시간은 평균 3.2일에 불과하여 보다 신속한 대응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남.

[국가위기관리체계 분야별 관계 법령]

연번	연도	재난명	재해기간		우선 선포일	최종 선포일	우선선포 소요기간 (일)
			시작일	종료일			
1	2003	제14호 태풍 매미	9.12	9.13	9.22	9.22	-
2	2004	대설피해	3.4	3.5	3.10	3.10	-
3	2005	대설피해	12.3	12.24	12.29	12.29	-
4	2006	7월 호우 및 제3호 태풍 에위니아	7.9	7.29	7.18	8.10	-
5	2007	제11호 태풍 나리	9.13	9.16	9.20	10.8	4
6	2011	7.26~29 호우	7.26	7.29	8.8	8.19	10
7	2011	제9호 태풍 무이파 및 호우	8.6	8.10	8.19	9.2	9
8	2012	제14호 태풍 덴빈·볼라벤	8.25	8.30	9.3	9.13	4
9	2016	제18호 태풍 차바	10.3	10.6	10.10	10.17	4
10	2017	11.15 지진	11.15	11.15	11.20	11.20	5
11	2019	제18호 태풍 미탁	10.1	10.4	10.10	10.17	6
12	2020	7.28~8.11 호우	7.28	8.11	8.7	8.24	-
13	2020	제9호 태풍 마이삭·하이선	9.1	9.7	9.15	9.23	8
14	2022	8.8~17 집중호우	8.8	8.17	8.22	9.1	5
15	2022	제11호 태풍 힌남노	9.4	9.7	9.7	9.28	-
16	2023	6.27~7.27 호우	6.27	7.27	7.19	8.14	-
17	2023	8.9~11. 제6호 태풍 ‘카눈’	8.9	8.11	8.14	8.29	3
18	2024	7.8~19 호우	7.8	7.19	7.15	8.13	-
평균 우선 선포 소요기간							3.2

자료: 행정안전부

개정안은 대규모 재난으로 특히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대통령에게 직접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긴급한 상황에 대한 선포 건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국비를 교부함으로써 피해지역의 조기 안정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심의 예외 사유를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령이 특별재난의 범위에 대하여 일정 피해금액 기준을 초과한 경우 등을 정하고 있는 것⁴⁾에 비해 다소 추상적으로 규정한 측면이 있어 보이므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현행 법령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국고지원 대상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선포 심의 절차를 배제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를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두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행법에 따라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특별재난의 범위 및 선포 등) ①법 제6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1.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1의2.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시·군·구의 관할 읍·면·동에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2. 사회재난의 재난 중 재난이 발생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3. 그 밖에 재난 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재난의 규모 및 특별재난지역 충족 여부에 관한 검토를 중앙대책본부장이 실시하고 있으므로, 대통령에게 선포에 관한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의할 수 있는 주체도 현행과 같이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아닌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할 필요가 있고,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349